

中國 CIETAC의 仲裁制度와 韓中兩國의 主要仲裁問題*

A study on the Arbitration system in the CIETAC and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problems of Korea and China

金 德 洊^{**}
朱 建 林^{***}

- I. 序 論
- II. 中國 CIETAC의 仲裁制度
 - 1. 中國의 仲裁
 - 2. CIETAC의 仲裁制度
- III. 韓中兩國의 國際商事仲裁紛爭現況
- IV. 韓中兩國의 主要仲裁問題
 - 1. 仲裁協議上의 問題
 - 2. 仲裁節次上의 問題
 - 3. 貨物賣買上의 問題
 - 4. 合資合作上의 問題
- V. 結 論

* 本論文은 1997. 10. 31 中國天津에서 中小企業振興公團 中國事務所 (北京)가 주최하고 中國天津韓國商會가 주관하여 개최한 「韓中兩國 國際商事紛爭과 仲裁制度의 現況과 展望」이라는 주제하의 國際學術討論會에서 共同發表한 내용을 修正補完하여 整理한 것임.

** 群山大學校 貿易學科 教授, 大韓商事仲裁院 仲裁人, 中國山東省威海仲裁委員會 仲裁人

*** 中國國際經濟貿易仲裁委員會 秘書長 呂 仲裁人

I. 序 論

韓中兩國은 黃海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하는 地政學的 여건에 따라 이미 오래전부터 문화 및 경제의 교류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양국은 근대화 과정에 있어서 당시 국제정치 및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한동안 한·중양국관계는 교류관계를 전혀 갖지 못하여 정치는 물론 경제·문화까지도 교류가 거의 없다가 지난 1992년 8월 한중수교와 함께 한중관계는 新紀元을 맞이하게 되었다. 특히 1950년대 단교이후 오늘날까지의 한중양국관계에 있어서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20년을 주기로 3段階 변화를 보이고 있다. 먼저 제1단계는 1953년 韓戰休戰協定에서 비롯한 韓中斷交로부터 한국의 대중무역금지조치와 함께 20년이 경과되는 1973년의 “6.23선언” 까지로써 마치 結冰期와도 같은 형세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그 후 동년 12월 법률 2407호(무역거래법)와 함께 다시 20년이 경과한 1992년 8월의 한중수교까지는 제2단계로써 마치 解冰期와도 같은 한중관계가 형성되었으며 한중수교이후 또다른 20년 동안은 제3단계로써 한중관계는 마치 開花期처럼 발전되고 있다.

최근들어 정치적으로는 한중양국 정상들이 잇따른 상호방문을 통하여 양국간의 폭넓은 協力方案을 논의하는 등 정상외교를 활발히 전개하고 있고 경제적으로는 1997년 말 현재 한중양국간 연간 교역액은 약 230억 US\$에 이르렀으며, 그 결과 중국은 한국의 최대 투자대상국이며 동시에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5대 투자국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한중양국 경제관계가 활목할만하게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한편 한국과 중국간의 국교수립후 양국간의 經濟交流는 급속히 發展·擴大되고 또한 무역량도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반면에 양국간의 무역분쟁 또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고는 한·중간에 교역량이 증가함에 따라 펼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무역분쟁을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중국의 중재제도에 대하여 정리해보고 이어서 수교이후 한중양국간의 무역클레임의 실태를 분석한 다음 이에대한 분쟁해결방안으로 양국의 主要仲裁문제를 比較分析 함으로써 그 대응책을 함께 모색하고자 하였다.

II. 中國 CIETAC의 仲裁制度

1. 中國의 仲裁

中國의 仲裁는 中國國際貿易促進委員會의 대외중재(涉外仲裁)와 中國各級工商行政管理局의 경제계약중재(國內仲裁)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다.

新中國성립후 중국정부는 1954년 5월 6일 중앙인민정부정무원의 제215차 정무 회의에서 對外貿易 중 발생하는 爭議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내에 대외무역중재위원회를 설립하기로 하였다.¹⁾ 이에 따라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는 1956년 對外貿易仲裁委員會를 설립하였으며 그 후 1959년에는 국무원의 결정에 따라 海事중재위원회를 設立하였다. 특히 1991년의 경우 중국중재위원회가 접수한 사건의 수는 이미 세계국제상사중재기구 중에서 2위를 점하는 급속한 발전을 하였다.²⁾

한편 중국의 仲裁法은 1994년 8월 31일 제정되었고 1995년 9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또한 중국은 1987년 4월에 UN의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일명 뉴욕협약)에 정식으로 가입하여 모든국가의 중재결정이 중국에서도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중국법원은 규정하고 있다.

중국 仲裁法에 의한 중국 仲裁制度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중재법을 포함해서 중국의 법은 민사법제도, 특히 독일제도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중국은 국제상사중재에 관해 다음과 같은 법과 규정을 공포한 바 있다.
 - (가) 국제무역 촉진을 위해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내에 국제무역 중재위원회 설치에 관한 중국정부의 국무원결정. 1954.
 - (나) 중국 - 외국합작투자에 관한 법. 1979.
 - (다) 외국업체와의 협력으로 연안 석유자원 개발에 관한 규정. 1982.
 - (라) 민사소송(재판시행을 위한)에 관한법. 1982.
 - (마) 중국 - 외국 합작투자에 관한 법 시행을 위한 법률. 1983.
 - (바) 외국업체에 관련되는 경제계약법. 1985.
 - (사) 중국 - 외국간에 계약에 의한 합작투자법. 1988.
 - (아) 외국인 소유기업에 관한 법. 1986.
 - (자) 민사소송에 관한 법. 1991년 개정. (唐厚志「中國의 國際商事仲裁 및 調停制度」韓·中·日 國際仲裁 심포지움(II) 大韓商事仲裁院, 1993. p5)
- 2) 大韓商事仲裁院, 「中國」 1993. p11.

(1) 중재기구에 의한 중재제도

중국 중재법 규정에 따라 중재는 반드시 仲裁機構에 의해서만 실시되며, 國內仲裁와 涉外仲裁로 구분한다. 중재기구는 어떠한 行政機關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된 기관이며, 또한 중재기구들 사이에도 예속관계가 서로 없다.

(2) 중재범위 및 중재가능제도

중국 중재법 제2조 규정에 의하면 평등한 주체로서의 공민 및 법인과 기타 조직 사이에 발생하는 계약분쟁과 기타 財產權의 분쟁은 仲裁할 수 있으나 婚姻, 養育, 감호, 부양, 상속상의 분쟁과 행정상의 분쟁은 중재할 수 없다.

(3) 협의 관할제도

당사자가 仲裁方式에 입각하여 분쟁을 해결할 때에는 반드시 書面仲裁合意를 체결하여야 하며 만일 仲裁合意가 없이 일방이 신청한 중재에 대해서는 중재기구가 이를 수리할 수 없다.

(4) 비공개주의 제도(비밀보장제도)

仲裁는 공개적으로 진행하지 않으므로 당연히 당사자들의 비밀은 보장된다. 그러나 만일 당사자가 서로 公開的으로 진행할 것을 협의한 경우에는 공개적으로 진행할 수도 있으며 단, 국가 기밀에 관계될 때에는 예외로 한다.

(5) 단심제도

중재는 一審에 의한 單審제도를 실시하며 판정후 당사자 일방이 동일 분쟁에 대해 재중재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기소할 수 없다. 또한 관련기관에 判定 變更을 청구할 수도 없다. 단, 判定에 대해 법원이 撤回 또는 不履行 판결을 한 경우 당사자는 해당 분쟁에 대해 쌍방이 새로 합의한 중재협의에 근거하여 仲裁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에 기소할 수도 있다.

(6) 강제집행제도

판정후 雙方은 당연히 그 결과를 자율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만일一方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일방당사자는 법원에 執行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법원은 법에 의거하여 집행해야 한다. 國內仲裁의 경우, 만일 피신청인이 판정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에 규정한 상황중의 하나가 저촉됨을 증명하는 증거를 제출하면 법원은 이에 대하여 집행불가를 裁定할 수 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217조 2항의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당사자가 계약중에 어떠한 仲裁條項도 체결하지 않았거나 사후 書面仲裁협의를 이루지 않았을 경우.

2) 判定事項이 중재협의의 범위에 속하지 않거나 혹은 중재기구가 중재할 권한이 없을 경우.

3) 중재 판정부의 구성 또는 중재절차가 法定절차를 위반하였을 경우.

4) 사실을 인정할 만한 주요 證據가 부족한 경우.

5) 적용한 法律에 확실한 착오가 있을 경우.

6) 중재인이 해당 사건을 중재시 賂物授受와 不正行爲 및 위법적인 判定行爲를 하였을 경우 등이다.

한편 섭외판정의 경우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60조의 규정을 당연히 적용하여야 하는바, 구체적인 규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당사자가 계약중에 어떠한 仲裁條項도 체결하지 않았거나 사후에 書面仲裁협의를 이루지 않았을 경우.

2) 피신청인이 지정 仲裁人 또는 중재 진행절차를 통지 받지 못하였거나 혹은 피신청인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기타 원인으로 인하여 의견을 진술하지 못하였을 경우.

3) 중재판정부의 구성 혹은 중재절차가 중재규칙에 부합되지 않았을 경우.

4) 판정사항이 중재협의의 범위에 속하지 않거나 혹은 중재기구가 중재할 권한이 없는 것일 경우 등이다.

또한 국내판정과 섭외판정이 적용 법률상 일치하지 않는 것은 실체에 대한 심사의 진행여부에 달려 있다. 따라서 섭외 판정에 대하여는 법원이 실체조사를 실시하지 않으나 단, 국내판정의 경우 법원은 실체조사를 실시한다.

(7) 중재판정의 취소제도

국내판정일 경우, 당사자가 仲裁法 제58조에抵觸이되는 상황이 있음을 증명하는 증거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그 判定을 취소 할 수 있다. 따라서 仲裁法 제58조에서 열거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중재 협의가 없는 경우
- 2) 판정사항이 중재협의의 범위에 속하지 않거나 혹은 중재위원회가 중재할 권한이 없는 것 일 경우
- 3) 중재판정부의 구성 또는 중재의 절차가 법정 절차를 위반하였을 경우
- 4) 판정시 근거한 증거가 위조된 것일 경우
- 5) 상대방 당사자가 공정한 판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증거를 은폐했을 경우
- 6) 중재인이 해당 사건을 판정중재시 뇌물을 강요, 수취하고 不正行爲와違法적인 판정행위를 하였을 경우 등이다.

따라서 인민법원은 해당 판정이 사회공공이익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되었을 경우 당연히 취소를 裁定할 수 있으며 섭외판정의 경우 법원은 마땅히 민사소송법 제26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8) 중재인의 名簿制度

중재기구는 반드시 중재인의 명부를 구비해야 하며 당사자는 중재인 명부 중에서 반드시 중재인을 선정해야 하는데 중재인의 임명에 대하여 중재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1) 중재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만 8년이 되는 자
- 2) 변호사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만 8년이 되는 자
- 3) 재판원 역임 기간이 만 8년이 되는 자
- 4) 법률연구, 교수업무에 종사하는 고위직 인사
- 5) 법률지식이 있고 經濟貿易 등 전문업무에 종사한 바 있는 고위직 인사이거나 혹은 대등한 專門的 수준에 이른 자 등이다.

2. CIETAC 의 仲裁制度

(1) CIETAC 仲裁規則의 特徵

중국국제경제무역위원회(china International Economic and Trade Arbitration Commission, 이하 약칭, CIETAC)의 仲裁規則은 중국국제상회에 의하여 제정되었으며 국제상의 주요 仲裁機構의 규정과 大同小異하다. CIETAC의 仲裁規則은 기구조직, 중재범위, 중재신청, 답변, 항소, 중재인의 지정, 심리, 판정, 언어의 사용, 중재비의 납부 등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본 CIETAC³⁾ 규칙의 주요 特徵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당사자 의사자치의 실현이다. 즉 중재지점의 선택, 수석 중재인의 지정, 언어의 사용, 화해 및 간이절차의 적용 등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여 당사자의 의사 존중원칙을 실현하고 있다.

둘째는 국제적 관례의 채용이다. 즉 중재인에 대한 기피, 異議의 포기, 증거수집, 전문가의 보고서 혹은 감정 보고서의 처리 등을 모두 규정하고 있다.

셋째는 격식과 내용의 개선이다. 즉 1995年 9月 4日 中國國際商會에서 修正과 함께 통과되어 同年 10月 1일부터 시행된 중국국제경제무역 중재위원회의 중재규칙은 총 4個章 81個條로 여기에는 제1장 총칙(제1조~제12조), 제2장 중재절차(제13조~제64조), 제3장 간이절차(제64조~제74조) 및 제4장 부칙(제75조~제81조)으로 되어 있으며 그 규칙내에는 중재판할, 조직, 중재신청, 답변과 항소, 중재판정부 구성, 심리, 판정(화해) 등으로 구성되어있고 또 이러한 사항들 역시 구체적이며 명확하게 그 내용들이 규정되어있다.

넷째는 실용성의 강화이다. 즉 관할권, 항소, 변경의 청구 및 추가, 판정기한의 처리뿐만 아니라 중재판정부가 다수의 의견을 형성할 수 없을 경우, 판정의 개정 혹은 보충, 규칙의 해석권 등 방면을 명확히 규정하여 仲裁節次를 實用的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밖에도 CIETAC의 仲裁規則은 CIETAC의 진정한 의미

3) CIETAC은 1956년 3월 31일에 설립되었고 설립 당시는 대외무역중재위원회(FTAC)라 호칭하였다가 1980년에 이르러서는 대외경제무역중재위원회(FETAC)로 개칭되었고 이어 1989년에는 오늘날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은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CIETAC)로 다시 개칭하여 北京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1984年 4月에는 深圳에 1990年 4月에는 上海에 각각 分會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를 가지고서 중재기구의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다. 실례로 관할권의 처리에 대하여 규칙 제4조 규정은 CIETAC에 의하여 규정된 것이다. CIETAC의 중재판정부에서 중재심리되는 모든 안건은 CIETAC에 의하여 지정된 비서국 직원 1명이 전문적으로 절차 및 관리업무를 책임진다. 따라서 쌍방 당사자의 중재문건 뿐만 아니라 중재판정부의 지시 혹은 서면통지는 반드시 CIETAC의 비서국에 제출해야 하며 그후 비서국은 쌍방의 당사자와 중재판정부에 전달해야 한다. 한편 중재판정부 개정일자는 중재판정부와 비서국이 상의하여 결정하고 비서국이 쌍방에게 개정일자를 통지하며 중재비용의 금액과 수취는 CIETAC에서 결정한다.

특히 CIETAC의 중재과정중 중재와 화해를 서로 결합, 절충하면서 시행하는 方式은 그 동안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는 이미 CIETAC 중재중 하나의 중요한 특징이 되고 있다. 최근 CIETAC의 안건 중 중재판정부에 의한 화해를 통하여 해결된 안건은 총 안건수의 20%~30% 정도에 이르고 있다.

(2) CIETAC 仲裁規則의 基本原則

CIETAC규칙은 CIETAC이 쌍방 당사자의 중재협의에 근거하여 중재신청을 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CIETAC은 중재인의 명부를 구비하고 있으며 그 중 중국국적과 외국국적의 중재인이 갖추어져 있으며⁴⁾ 당사자뿐만 아니라 CIETAC의 주임은 중재인의 명부에서 중재인을 선정 할 수 있다. 하나의 중재안건은 보통 3명으로 구성된 중재판정부 혹은 1명의 단독 중재인이 심리할 수 있으며 쌍방이 공통으로 수석 중재인 혹은 단독 중재인을 지정할 수 있다. 만약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CIETAC의 주임이 지정하며 또한 어느 일방 당사자는 서면으로 중재인의 기피를 요구할 수도 있다. 단, 중재인의 기피 여부는 당연히 CIETAC 주임이 결정하며 중재판정부는 서면으로 안건을 심리할 수 있으며 또한 개정하여 안건을 심리할 수도 있다. 단, 개정은 모두 비공개로 실시되는 것이 원칙이며 쌍방의 동의를 거쳐 중재판정부는 쟁의에 대하여 화해를 진행할 수 있다. 만약 화해가 성공하지 못했을 경우 당사자 어느 일방도 공히 그후의 중재절차, 사법절차, 및 기타 어떤 절차에서 당사자 상대측 또는 중재판정부가 화해과

4) 국제경제 무역중재위원회는 현재 약 290명의 중재위원이 있으며 그 중에는 홍콩을 비롯 20여개국의 외국국적을 지닌 중재위원이 86명이며 한국의 중재위원은 4명이나 포함되어 있다.(한국무역협회 「對中國交易 및 투자안내」 1995. 9. p.142)

정에서 발표, 제기, 전의, 인정, 그리고 접수할 용의를 표시했거나 부정한 임의의 진술, 의견, 견해 또는 전의를 자기의 청구, 답변 또는 항소의 근거로 하지 못한다. 따라서 중재판정부는 사실과 법률에 근거하고 국제관계를 참고하여 공평·합리의 원칙에 따라 독립적이며 공정하게 판정을 하여야 한다.

이때 중재판정은 당사자 雙方에 최종적인 拘束力を 가지며 당사자 어느 일방도 법원에 提訴하지 못할 뿐만아니라 기타 임의의 기구에 仲裁판정의 변경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당사자들 간에 별도로 約定이 없는 한 爭議 금액이 인민폐 50만원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또는 쟁의금액이 인민폐로 50만원을 초과하지만 당사자의 일방이 書面으로 신청하고 상대방이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CIETAC규정의 간이절차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3) 보통절차와 간이절차

CIETAC 중재규칙은 간이절차에 대하여 제3장 제64조에서 제74조까지 규정하고 있으며 모두 11개 條項으로 되어있다. 따라서 간이절차는 보통절차를 簡素化한 형식이다.

간이절차는 제64조에 의하면 쟁의금액이 인민폐 5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쟁의안건에 적용하며 당사자들간에 별도의 약정이 있을 경우는 예외이며 만약 금액이 인민폐 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쌍방의 동의에 의하여 간이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간이절차 제65조에 의하면 중재판정부가 單獨 중재인 1명에 의하여 설립되며, 해당 중재인은 우선 쌍방이 공동으로 선정하며 쌍방이 공동으로 선정할 수 없을 경우 CIETAC 주임이 지정한다. 간이절차의 제출서류 및 심리기한은 보통절차보다 간소하며 그리고 심리방식은 중재판정부에 의하여 결정되며 중재판정부는 서면심리 또는 개정심리 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중재판정부 구성일로부터 90일 내에 중재판정 하여야 하는데 이것이 간이절차의 최대 특징이기도하다.

한편 간이절차는 보통절차를 간소화한 것으로써 적용되는 사항에 대하여 규칙 제74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때 간이절차의 章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중재규칙의 기타 각 章의 관련규정을 적용한다. 실제로 중재신청에 관련된 수속문제, 중재협의 문제, 중재 관할권 문제, 중재인 기피문제, 화해문제, 승소측 변호사

비용 지출에 대한 보상 문제, 판정서의 내용과 수정 및 보충 등 문제 등을 보통 절차의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하고 있다.

(4) 仲裁 협의 및 管轄權 문제

중재협의는 당사자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혹은 발생할 수 있는 쟁의에 대하여 중재를 신청하기 위하여 약정한 협의를 말하며 당사자는 계약에 중재조항을 제정하거나 별도로 협의를 체결 혹은 인용의 방식으로 중재협의를 이룰 수 있다. 중국 중재법과 1958년 뉴욕협약의 규정에 의거하여 중재협의는 반드시 서면형식 혹은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쌍방이 제정한 중재협의는 쌍방 모두 구속력을 받으며 쟁의발생 후 어떤 일방도 중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동시에 법원의 쌍방 쟁의에 대한 관할권 행사를 배척할 수 있으며 만약 일방이 중재협의에 따라 처리하지 않고 법원에 기소하였을 경우 다른 일방은 중재협의에 의거하여 항변할 수 있으며 법원에 소송절차 정지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법원은 중국 중재법 제5조 규정에 의거하여 당사자 일방의 기소에 대하여 수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특히 중국 중재법 제16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중재협의는 반드시 중재청구에 대한 의사표시 와 중재사항 및 선정한 중재기구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만약 어떠한 사항이라도 부족할 경우 중재협의는 무효가 되며 그렇기 때문에 쌍방 당사자는 반드시 중재협의의 형식과 내용의 엄격한 요구에 대한 중국 중재법 및 중국 법원의 사법해석에 주의해야 한다.

한편 중국 CIETAC의 중재업무 실시중 중재협의의 효력과 중재 관할권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당사자 및 CIETAC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누가 그 문제에 관하여 결정하는 것은 당사자의 관심이 되고 있다. 중국 중재법과 CIETAC 규칙의 규정에 근거하여 중재협의의 효력과 중재 관할권은 중재기구가 결정하며 또한 중재판정부의 구성 전후를 막론하고 관할권은 중재기구에 의하여 결정한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4가지의 의미를 포함하는데 첫째, 중재기구의 관할권 결정과 기타 국제 중재기구의 중재방법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기타 중재기구의 중재 방법은 관할권을 결정한 중재기구가 결정한다는 것이다. 둘째, 중재기구의 관할권 결정 후 중재판정부가 안전심리 중 중재기구의 관할권 결정에 착오가 발견되었거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중재기구는 중재판정부의 보고에 의거하여 중재기구

의 관할권 결정을 변경하거나 정정할 수 있다.셋째, 중재기구가 관할권을 결정 하더라도 안건에 대한 중재판정부의 독립심리와 판정에 간섭할 수 없다.넷째, 당사자는 관할권 문제에 대하여 법원에 裁定을 청구할 수 있다. 만약 중재기구의 결정과 법원의 裁定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의 裁定에 준하여야 한다.

(5) 중재절차

1) 중재신청, 답변, 항소

① 중재신청

중재신청은 중재절차 개시 전에 반드시 필요한 수속으로써 CIETAC중재규칙 제14조에 의하면 신청인은 CIETAC에 중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에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명칭, 주소, 전신약호, 팩스, 전화, 법인대표; 중재협의서; 사건의 내용과 쟁의요점; 신청인의 청구 및 그 사실적 근거와 증거 명시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신청인은 중재관련 사항을 변호사에게 위탁할 수도 있으며 이 때 서면형식의 위임장을 제출함과 동시에 신청서에는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대리인이 서명 혹은 날인하여야 하며 일시도 명기하여야 한다.

한편 신청인이 중재신청서를 회부할 때는 사실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이때 신청서, 증명서류 및 관련서류는 1式 5通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또한 신청인은 중재신청시 서면으로 1명의 중재인을 선정하거나 혹은 CIETAC 주임에게 지정을 위탁할 수도 있으며 신청인은 CIETAC이 제정한 중재비용표 규정에 따라 중재비를 선납하도록 되어 있다.

② 답변

중재규칙제17조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CIETAC의 중재통지서를 입수한 날로부터 45일 내에 신청인의 중재신청서에 대한 답변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피신청인의 답변은 피신청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신청인의 신청서 요구에 대하여 사실과 원인에 근거하여 회답과 항변을 할 수 있으며 또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청구에 대하여 답변할 수 있으며 승인, 불승인 혹은 반대를 청구 할 수 있다. 뿐만아니라 부분승인, 부분 불승인, 부분 반대를 할 수도 있다.

한편 피신청인의 답변은 중재판정부의 공정한 심리와 판정에 유리하며 단, 피신청인이 답변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중재절차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③ 항소

중재규칙에 의거하여 피신청인은 항소할 수 있는데 단, 중재통지서를 입수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한을 초과할 경우 CIETAC은 수리하지 않지만 그러나 중재판정부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이 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 사실상, CIETAC의 중재업무중 피신청인이 기한을 초과하여 항소할 경우 신청인이 동의하고 중재판정부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CIETAC은 수리할 수 있으며 중재판정부는 이에 통합심리 할 수 있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항소할 경우 항소장에 항소이유 및 사실근거와 증거를 제시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또한 중재비용표의 규정에 따라 중재비도 선납 하여야 한다.

2) 중재인의 지정과 기피

① 중재인의 지정

CIETAC의 1995년 규정에 의거하면 중재판정부는 3인 혹은 1인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3인의 중재판정부일 경우 당사자 쌍방은 각각 1명씩 선정하거나 주임에게 위탁하여 1명을 지정할 수 있다. 3명의 중재인 중 수석 중재인을 쌍방 공동으로 지정하거나 주임이 위탁 지정할 수 있으며 1명으로 중재판정부를 구성할 경우 쌍방이 공동으로 지정하거나 주임에게 위탁하여 지정할 수 있다.

수석 중재인 혹은 단독 중재인을 막론하고 쌍방이 공동으로 지정하지 못할 경우 CIETAC의 주임이 지정하며 중재안건에 2명 혹은 2명이상의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이 있을 경우 신청인간에 혹은 피신청인간의 협상을 거친 후 공동으로 1명의 중재인을 지정한다. 만약 공동으로 지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CIETAC의 주임이 CIETAC의 중재인 명부에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

② 중재인의 기피

당사자가 지정된 중재인이 안전과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CIETAC에 중재인의 기피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당사자가 지정된 중재인의 공정성과 독립성

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로 의혹을 가질 경우 서면으로 CIETAC에 해당 중재인의 기피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때 구체적인 사실과 이유를 설명하고 증거도 함께 제시하여야 하며 중재인 기피청구는 제1차 개정 전에 서면으로 제기하여야 하고 만약 제1차 개정 심리후에 기피 사유가 발생했음을 알게 되었다면 최종 개정 폐정 전에 제기하여야 한다.

③ 보전조치

보전조치(임시조치라고도 함)는 재산보전조치와 증거보전조치로 구분할 수 있는데 CIETAC의 중재규칙 제23조 규정에 의거하여 당사자는 재산보전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때 CIETAC은 신청서를 피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그 재산소재지의 중급인민법원에 회부하여 해결하게 하여야 하며 당사자가 증거보전을 신청하였을 경우 CIETAC은 당사자의 신청서를 증거소재지의 중급인민법원에 회부하여 판정하게 하여야 한다.

인민법원의 재산보전을 재정한 후 피신청인이 담보를 제공할 경우 인민법원은 재산보전을 해제할 수 있으며 재산보전 신청에 착오가 있을 경우 인민법원은 신청인에게 재산보전에 의한 피신청인의 경제손실에 대하여 보상할 것을 재정한다.

④ 발 송

국제상사중재 업무중 중재문건 발송문제는 매우 중요한데 CIETAC의 중재규칙 제76조의 발송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중재 관련 서류, 통지서, 자료등은 인편으로 혹은 등기우편 혹은 항공 특별속달, 팩스, 텔레스, 전보 혹은 중재위원회 비서국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방식으로 당사자 또는 그 중재대리인에게 발송한다.” 또한 제77조 규정을 보면 “당사자 또는 그 중재대리인에게 발송하는 모든 서면통신을 수신인에게 직접 전달하였거나 수신인의 영업지점, 상주주소 혹은 통신주소에 전달하였거나 혹은 상술한 그 어느 지점도 찾을 수 없는 경우에 등기우편 혹은 배달企圖의 기록을 제공할 수 있는 기타 임의의 수단으로 알려진 수신인의 최종 영업지점, 상주주소 혹은 통신주소에 배달하였다면 이미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로 되어 있다.

⑤ 심 리

CIETAC의 규칙에 의거하여 중재심리는 서면심리와 개정심리 2종류로 구분할 수 있고 또한 중재판정부는 중재시 아래의 원칙에 의거하여 법률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 당사자의 약정에 의거하여 적용되는 법률을 선택한다.

Ⓑ 밀접한 관련원칙에 의거하여 법률을 선택, 적용한다.

Ⓒ 국제조약과 국제관련의 원칙에 의거하여 법률을 선택, 적용한다.

Ⓓ 특별규정 원칙에 의거하여 법률을 선택, 적용한다.

⑥ 증 거

중재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중재판정부의 안건심리 원칙은 사실에 근거하고 법률에 따르는 것이며 또한 중재판정부가 심사 결정한 증거에는 서증, 물증, 시청각 자료, 감정결론, 검증기록 및 당사자의 서면 혹은 구두 진술과 증인의 증인이 포함된다.

따라서 당사자가 제공한 증거 혹은 중재판정부가 직접 조사, 수집한 증거를 막론하고 모두 중재판정부에서 구체적인 분석과 전면적인 고찰을 통하여 확실성을 판단하며 증거로서의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⑦ 중재와 화해

중재판정부가 중재과정중 중재안건에 대하여 먼저 화해를 진행시킬 수 있는데 이러한 방법을 보통 “중재와 화해의 결합”이라고 칭한다. 이것은 CIETAC의 중재특징 중 하나이다.⁵⁾

중재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쌍방이 화해를 원할 경우 또는 당사자 일방이 화해를 원하고 다른 일방이 동의하였을 경우 중재정은 심리안건에 대하여 화해를 진행할 수 있다.

따라서 중재판정부의 안건에 대한 화해는 쌍방 당사자의 자원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강제성이 없으며 중재절차중의 필수절차는 아니다.

쌍방이 체결한 화해협의서는 쌍방간의 분쟁쟁의를 해결하여 주는 구속성 법률문건으로 쌍방은 중재판정부에 사건철회 결정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는 화해협의서의 내용에 근거하여 사건의 종결을 청구할 수도 있다.

5) 中國投資指南, 中信出版社, 1997. 9. 24.

만약 화해가 이루어지지 못했을 경우 중재판정부는 화해절차를 중지하고 중재 절차를 회복시키는데 이때 당사자의 어느 일방도 그 후의 중재절차 혹은 소송절차에서 중재인 또는 상대방이 화해절차 중에 제기, 견의, 표시하였던 의견 혹은 견의를 청구, 답변 또는 항소의 근거로 하지 못한다. 그밖에도 중재판정부 또한 화해과정 중 쌍방 당사자가 제기, 표시하였던 의견 혹은 견의에 대하여 판정의 근거로 하지 못한다.

⑧ 판 정

중재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중재판정부는 중재판정부 구성일로부터 9개월 내에 심리하는 안건에 대하여 중재판정을 하여야 하며 이때 간이절차의 경우 중재판정부 구성 일로부터 3개월 내에 판정하여야 한다. 단, 확실한 필요성과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중재판정부는 기한연장을 신청할 수도 있다. 한편 중재판정부는 적시에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혹은 기타 문제의 심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이미 확실해진 약간의 문제에 대하여 부분판결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때 부분판결은 종결성 판결이다.

중재판정부는 안건 심리 종결 후 당사자의 쟁의사항 전부에 대하여 종결전 판정을 결정하는데 이러한 판정을 최종판정이라 하며 중간판정, 부분판정 및 최종판정은 서면으로 작성되며 반드시 중재인이 서명하여야 한다.

3인으로 구성한 중재인일 경우 판정을 다수 중재인의 의견과 다수 중재인이 서명하여야 하며 만약, 중재판정부가 다수의 의견을 형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수석 중재인의 의견에 따라 판정하며, 수석 중재인 1명이 서명한다.

판정서에는 중재청구, 쟁의사실, 판정이유, 판정결과, 중재비용의 분담, 판정일시와 지점을 명기하여야 하고 또한 CIETAC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한편 CIETAC의 규칙에는 판정회부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ICC 중재방법을 도입한 것이다. 판정회부제도에 의거하여 중재인은 판정서에 서명하기 전에 판정서 초안을 CIETAC에 회부하여야 하며 이때 CIETAC은 중재인의 독립적 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황에서 판정서의 형식에 대해 중재인의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다.

또한 쌍방의 당사자가 화해를 통해 쟁의를 해결하였을 경우 중재판정부는 쌍방의 화해협의서 내용에 근거하여 판정을 결정한다. 이것을 이른바 “和裁”라고 칭하는데 “和裁”는 비교적 간단하여 판정이유를 설명할 필요는 없다.

판정의 수정 또는 보충의 문제에 대하여서는 중재규칙 제61조는 규정하고 있는데 당사자 일방은 중재판정서를 입수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중재판정서의 기술내용, 타이핑, 계산상의 오류에 대하여 서면으로 중재판정부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확실한 오류가 있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서면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서면시정을 하며 중재판정부가 중재판정서를 발송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자체적으로 서면시정을 할 수도 있다. 한편 제62조에 근거하여 만약 중재판정에 누락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어느 일방도 중재판정서를 입수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서면으로 중재판정부에 누락된 사항에 대한 보충판정을 청구할 수 있으며 만약, 확실히 누락한 사항이 있을 경우 중재판정부는 서면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보충판정하며 이때 중재판정부는 중재판결서를 발송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자체적으로 보충판정할 수도 있다.

⑨ 중재대리와 중재언어

가) 중재대리인

중국 중재법 제29조에 의하면 당사자, 법정대리인은 변호사와 기타 대리인에게 위탁하여 중재활동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CIETAC 규칙 제22조에 당사자는 중재관련 사항을 중재대리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중국공민이나 외국공민은 모두 위탁을 받고 중재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중국공민이나 외국공민이 중재대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당사자가 중국 또는 외국 변호사를 중재대리인으로 지정하며 중재활동에 참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중재대리인으로서의 외국 변호사는 중재활동 참여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중국 또는 외국 변호사를 막론하고 수권중재대리인은 반드시 중재기구에서 면접식의 수권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하며 수권위임장에 대한 인증 혹은 공증은 필요 없다.

나) 중재언어

CIETAC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中文을 중재의 공식언어로 하며 당사자가 별도의 약정을 가지고 있을 경우는 그 약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CIETAC의 중재업무 중 절대 다수의 중재안건이 중문을 사용하고 있으며 소수의 안건만이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영문을 사용하기도 한다.

중재판정부 개정시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 증인이 통역을 필요로 하는 경우

CIETAC의 비서국은 통역을 제공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자체로 통역을 제공할 수도 있다.

중재과정 중 당사자가 회부한 각종 서류와 증명자료에 대하여 중재판정부 또는 CIETAC의 비서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중문번역본 또는 기타어 번역본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⑩ 비용과 분담

CIETAC 중재비용표의 규정에 의거하여 중재비용은 쟁의금액과 백분율 체감의 방식으로 계산하는데 실제로 쟁의금액이 인민폐 100만원 이하일 경우 중재비용은 쟁의금액의 4%로 한다. 단, 이때 최저금액은 2만원이다. 인민폐 100만원에서 인민폐 500만원일 경우 중재비용은 인민폐 140,000원과 인민폐 100만원 이상 부분의 3%로 한다. 인민폐 500만원에서 인민폐 1000만원일 경우 중재비용은 인민폐 160,000원과 인민폐 500만원 이상부분의 2%로 한다. 뿐만아니라 중재신청시 배건 당 별도로 인민폐 10,000원을 수취하며 중재신청시 쟁의금액이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CIETAC의 비서국 혹은 분회의 비서처가 중재비용 액수를 결정한다. 특히 중재비용을 외환으로 수취할 경우에는 중재비용표의 규정에 의거하여 인민폐에 해당하는 외환을 수취한다.

CIETAC은 중재규칙 제78조 규정에 의거하여 당사자에게 중재비용을 수취하는 외에 기타 경비의 합리적인 실제 지출비용을 수취할 수 있는데 실제로, 중재인의 특별보수, 출장비, 숙박비 및 중재판정부가 초빙한 전문가, 감정인, 통역 비용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한편 쌍방이 자율적으로 화해하고 철회를 신청한 안건에 대하여 CIETAC은 업무량과 실제 지출에 따라 중재비용을 수취한다.

중재비용과 실제 지출 비용은 CIETAC이 결정하는데 비용분담하는 것에 관한 쌍방의 약정이 없을 경우 중재판정부는 판정서에 裁定한다.

특히 중재안건의 해결을 위하여 지출한 승소측의 합리적인 비용 보상 문제에 관하여 중재판정부는 판정서에 裁定할 수 있으며 단, 보상금액은 승소측의 승소 금액의 10%를 넘지 못한다.

III. 韓中兩國의 國際商事紛爭現況

한중수교와 함께 1992년 12월 15일 중국 북경에서 체결한 한·중상사중재협정에 따라 한중간에 무역 Claim의 제기가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먼저 중국측 중국국제경제무역위원회(China International Economic and Trade Arbitration Commission ; CIETAC)가 접수 수리하여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表 1>와 같다.

<表 1> 한·중 양국 Claim 發生 現況

(단위 : 건수-건, 금액-US\$)

()는 전년도 증가율

연도 \ 구분	Claim 提起 件數			Claim 총금액
	한국측	중국측	계	
1992	0 ()	4 ()	4 (-)	226,891.56 (-)
1993	4 (400)	10 (150)	14 (250)	6,111,079.24 (2,593)
1994	5 (25)	34 (240)	39 (178.6)	9,689,130.01 (59)
1995	9 (80)	29 (14.7)	38 (-2.6)	8,999,908.02 (-7)
1996	11 (33.3)	31 (6.9)	42 (9.5)	12,703,068.21 (41)
1997 (1~10월 말)	11	18	29	18,542,636.25
총 계	40	126	166	5,077,271,329.00

CIETAC 통계 자료(1997. 10. 31 현재)

이 표에 의하면 1992년부터 1997년 10월말 현재까지 한중간에 발생한 Claim 건수는 총 166건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한국측이 중국측에 제기한 Claim수는 총 40건으로 전체의 약 24.1%인 1/4에 불과하지만, 중국측이 한국측에 제기한 Claim

수는 총 126건으로 전체의 약 3/4인 75.9%에 달하여 수교와 함께 한중교역에 많은 문제점들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同期間에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CIETAC)가 집계한 166개의 중재안건중 발표원인을 종류별 분석해보면 일반화물의 매매건수가 61件, 원자료 매매건수가 54件, 설비 매매건수가 14件, 합資 및 合作件數가 27件, 보상 무역건수가 8件 그리고 기타가 2件으로 나타났다.

또한 CIETAC이 접수수리한 한중간의 Claim 금액 역시 위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마다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수교와 함께 중국측국민이 제기한 Claim금액은 226,891.56US\$인 것이 이듬해인 1993년에는 6,111,079.24 US\$로 전년도의 27배에 달하는 급격한 변화를 나타내고 있어 앞으로 한중간의 중재제도의 긴밀한 협조체제가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중국측 CIETAC 자료와 다소 차이가 있지만 한국측 대한상사중재원(KCAB)에서 접수집계된 Claim 현황을 보면 다음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Claim 발생 총건수는 중국측 자료보다 다소 낮은 121건이며 금액은 28,321千 US\$로 중국측 자료와는 많은 차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양국이 각각 다른 집계산정방식에서 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表 2> 대중국 클레임 현황

(단위 : 건수-건, 금액-US\$千)

구분	1992~1993		1994		1995		1996		1997. 3		총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알 선	23	6,766	30	11,944	36	5,042	17	1,019	4	502	110	25,273
중 재	-	-	4	995	1	752	3	505	3	796	11	3,048
계	23	6,766	34	12,939	37	5,794	20	1,524	7	1,298	121	28,321

자료 : 대한상사중재원 클레임 통계자료, 1992~1997

<表 3> 수출입별 클레임 현황

(단위 : 건수~건, 금액-US\$千)

구 분	1992-1993		1994		1995		1996		1997.3		총 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수 출	13	5,357	23	10,031	15	3,318	9	456	-	-	60	19,162
수 입	10	1,409	11	2,908	22	2,476	11	1,068	7	1,298	61	9,159
계	23	6,766	34	12,939	37	5,794	20	1,524	7	1,298	121	28,321

자료 : 대한상사중재원 클레임 통계자료 1992-1997

또한 클레임을 수출입형태별로 살펴보면 다음 <표 3>와 같으며 이를 분석해 보면 수출로 인한 클레임은 총 60건에 금액은 19,162천 US\$에 이르고 있고 수입으로 인한 클레임은 총 61건에 금액은 9,159천 US\$에 이르고 있다. 양국간의 수출과 수입의 발생건 수에서는 서로 비슷한 접수현황을 나타내고 있으나 금액에서는 수출이 총금액 28,321천 US\$중에서 68%를 차지하고 있어 수출금액이 수입금액보다 클레임금액이 큰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밖에, 원인별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 4>과 같으며 이를 분석해 보면 대금결제와 관련된 클레임이 39건에 금액도 가장 많으며 대금결제와 함께 품질불량에 관련된 클레임은 점차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납기지연에 관한 클레임은 급속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짐계 되고 있다.

<表 4> 원인별 클레임 현황

(단위 : 건수-건, 금액-US\$千)

구분	1992-1993		1994		1995		1996		1997.3		총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품질불량	7	578	5	568	10	1,306	5	549	1	258	28	3,259
납기지연	4		11	474	8	173	4	436	5	1,027	32	2,110
대금결제	5	5,480	13	4,721	13	4,103	8	360	-	-	39	14,664
기 타	7	708	5	7,176	6	212	3	179	1	13	22	8,288
계	23	6,766	34	12,939	37	5,794	20	1,524	7	1,298	121	28,321

자료 : 대한상사중재원 클레임 통계자료 1992-1997

또한 품목별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5>과 같으며 수교첫해인 1992년과 1993년은 1차산품이 6건인데 비해 1995년에는 13건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대체적으로 보아 품목별 클레임발생빈도는 여러 품목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表 5> 품목별 클레임 현황

(단위 : 건수-건, 금액-US\$千)

구분	1992-1993		1994		1995		1996		1997.3		총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전기전자	6	917	9	100	3	425	1	1	-	-	10	1,443
철강금속	3	4,403	3	885	2	27	-	-	2	517	10	5,832
화학공업	-	-	1	367	5	2,094	1	75	1	6	8	2,542
생활용품	4	346	7	7,667	1	2	3	154	-	-	15	8,169
기 계 류	3	553	5	1,408	2	72	-	-	-	-	10	2,033
일차산품	6	461	5	190	13	257	5	416	2	407	31	1,731
섬 유 류	1	86	2	197	8	715	2	60	1	90	14	1,148
기 타	-	-	2	2,125	3	2,202	8	818	1	278	14	5,423
계	23	6,766	34	12,939	37	5,794	20	1,524	7	1,298	121	28,321

자료 : 대한상사중재원 클레임 통계자료, 1992-1997

IV. 韓中兩國의 主要仲裁問題

1. 仲裁協議上의 문제

중재협의는 중재기구가 중재안건을 처리하는 근거이고, 또한 중재판정이 집행력을 지니는 전제조건이다. 또한 중재협의는 법원관할력을 배제하는 효력을 지니고 있다. 만약 중재협의가 무효이면 관할권이 지니고 있는 법원이 당사자간의 분쟁을 처리할 수 있고 (중국중재법 제5조) 중재기구가 중재를 했을 지라도 법원이 역시 중재협의가 없는 이유로 중재판정을 무효시킬 수 있거나 (중국 중재법 제58조, 제70조) 집행하지 않을 수 있다. (중국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260조, New York 협약 제5조 제1항) 그래서 중재협의가 존재하는지, 중재협의가 유효하는지 여부는 중재절차의 진행과 중재판정의 효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만약 당사자가 중재의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려고 한다면 다음과 같이 중재협의의 계약에 대한 몇가지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첫째, 반드시 서면 중재협의를 맺어야 한다.

중재협의는 계약중에서 명확하게 달성한 중재조항일 수도 있고 또한 기타 서면적인 방식으로 분쟁이 발생하기전이나 후에라도 중재를 요구하는 협의일 수도 있다.(중국중재법 제16조)

실제로 당사자가 무역계약의 주요조항(당사자의 명칭, 화물의 수량과 품질, 지급조건, 인도기한 등을 포함) 만을 체결하고 기타 조항은 보통 화물인도일반조항을 인용하기만 하고 따로 체결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화물인도일반조항은 당사자가 체결한 조약의 뒷면에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중재 조항 포함) 따로 문건으로 될 수도 있다. 이때 당사자가 항상 중재협의의 존재여부에 분쟁이 발생한다. 특히 FAX로 조약을 맺을 때 더욱 이러한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중재협의가 명확해야 한다.

중국 중재법의 규정에 따라 중재협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하여야 한다.

- (1) 중재를 통해서 해결한다는 의사표시, 즉 쌍방은 반드시 중재라는 방법(다른 방법이 아닌)으로 분규를 해결한다는 태도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 (2) 중재사항 즉 중재할 구체적인 사항

(3) 선정된 중재위원회 등이다. 만약 중재협의에는 중재사항과 중재위원회에 대한 약속이 없거나 약속이 명확하지 않다면 그리고 당사자가 보충협의도 달성하지 않았으면 중재협의가 무효로 인정된다.

특히 당사자들 사이에 동시에 두 개의 중재기구를 선정하는 경우 만약 중재협의에는 중재기구에 대한 약속이 명확하고도 실행할 수 있다면 당사자가 선정된 중재기구중의 하나가 중재를 진행하면 중국법원도 개별안건으로 이 중재협의의 효력을 인정한다. 그러나 중국이 成文法국가로 안건에 대한 제약력이 없기 때문에 당사자가 이런 약속을 하는 것이 분쟁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한·중 당사자가 될 수 있으면 하나의 중재기구를 선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셋째, 중재사항은 반드시 중재할 수 있는 사항이어야 한다.

중국중재법의 규정에 따라서 약속한 중재사항이 법률이 규정된 중재범위를 넘었을 경우일 때에 중재협의는 무효이다. 이것은 주로 약속한 사항은 중재할 수 없는 사항일 때, 즉 <중화인민공화국중재법>제3조에 규정된 분규, 혼인, 收養, 監護, 부양, 계승분규 및 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처리해야 할 행정분쟁들을 가리킨다. 지난 몇년동안에 CIETAC가 처리했던 분쟁들은 주로 화물(일반화물, 원자재, 기계설비을 포함)의 매매, 합자합작, 보상무역, 등등이다.

2. 仲裁節次上의 문제

(1) 관할권의 異議

관할권의 이의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가리킨다. 즉, (1) 중재협의에 대한 이의와, 중재협의의 존재에 대한 이의 및 재협의의 효력에 대한 이의(분쟁사항의 중재 가능성에 대한 이의)등등과 (2) 중재사항에 대한 이의, 즉 분쟁사항이 약속한 중재사항범위내에 속한 것에 대한 이의 등등이다.

관할권이의에 대한 관할권한은 현대 중재규칙과 국제조약은 중재판정부가 자신의 관할권에 대해 결정을 한다는 것을 모두 균등하게 승인한다. 이 원칙은 “自裁管轄權(Kompetenzen-kompetenz)”이라고 칭한다. 자재관할권은 당사자가 달성하는 중재로 서로간의 분규를 해결한다는 협의를 실시하기 위해 발전해온 것이다. 어느 한 쪽이 중재정의 관할권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 이 원칙은 시간과 금전을 절약할 수 있고 동시에 중재정은 자기가 지니고 있는 관할권에 대해 결정

할 수 있으며 더욱 진일보하고 실질적인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이 개념의 기초는 중재조항의 자치성과 가분합성이다.

특히 중국법률에 중재협의의 효력에 대한 관할권한은 중재판정부에다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중재위원회와 인민법원에다 부여한다. 그리고 중재위원회와 인민법원인 두 중재협의에 대한 이의를 받을 때 인민법원은 중재협의의 효력에 대해 최종 결정권을 지니고 있다. 중국중재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중재협의의 효력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중재위원회에 결정을 내려달라는 요구를 할 수 있고 혹은 인민법원에 재정을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어느 한 쪽이 중재위원회에 결정을 내려달라고 하고 다른 한 쪽이 인민법원에 재정을 해달라면 인민법원이 재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당사자가 중재협의의 효력에 이의가 있다면 반드시 중재판정부가 처음에 개정하기 전에 제출해야 한다.”

중재사항의 이의에 대해 중국중재법에는 중재협의의 효력에 관한 것인만큼 명확한 규정은 없다. 그러나 CIETAC의 중재규칙의 제4조의 규정을 따르면 중재위원회가 중재안건의 관할권에 대해 결정을 내릴 권한이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중재안건의 관할권에 대한 항변은 중재정판정부가 처음에 열리기 전에 제출해야 한다.

(2) 缺席 審理 및 判決

CIETAC가 접수한 한·중간의 분쟁은 상당한 부분의 한국 당사자들이 중재심리에 참석하지 않고 있는데, 그중에는 객관적인 원인도 있지만 (예를 들면 한국 측 당사자가 파산이 돼 있는 경우), 그러나 대부분은 주관적인 원인 때문이다. 그 외에도 한국측 당사자가 중재에 대해 중요시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뿐만 아니라 극소수이기는 하지만 어느 한쪽의 당사자가 고의적으로 중재절차를 지연시키려고도 하는 경향도 있다. 어느 한 쪽의 당사자가 중재절차를 참석하지 않아도 객관적으로 보면 안건 사실의 조사과정에는不利한경우를 갖여온다.

<중화인민공화국중재법>제25조에 “..... 피신청자가 답변서를 제공하지 않아도 중재 절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제42조에 “신청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중재판정부에 가지 않거나 중재판정부의 허락없이 도중에 퇴출하면 중재신청을 철회하는 것으로 본다. 이런 상황아래에서도 결석 판정은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CIETAC 제42조에서도 또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중재판정

부 개정시 한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중재판정부는 결석심리를 진행할 수 있고 결석 판정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만약 CIETAC가 신청자에게 중재통지 및 중재판정부구성통지와 개정통지를 보냈는데도 피신청자가 답변도 하지 않고 개정심리에도 참석하지 않으면 중재법과 CIETAC중재규정에 따라서 그 중재절차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물론 신청자의 중재요구에 대해 중재판정부는 심사도없이 완전히 지지하느 것만도 아니다. 사실에 맞고 합리적인 중재요구만을 CIETAC중재판정부는 지지하고 있을 뿐이다.

(3) 화 해

조정과 중재의 결합이야말로 CIETAC중재의 큰 특색중의 하나이다. CIETAC의 중재인측은 중재절차중에서 조정을 강조하는데. 특히 한·중간의 안건을 중재할 경우를 보면 그동안 CIETAC접수된 한·중간의 중재안건중에 25%정도가 조정의 방식으로 해결하였는데 이것은 전통성에 바탕이 되어 있는 동양사람들의 화해정신에 걸맞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중재절차중에 당사자간의 화해가 중재판정부의 주선아래서 해도 좋고 판정부외에서 스스로 해도 좋다. 만약 당사자들 간에 화해의 협의가 달성했다면 신청인을 통해서 안건을 철수한다고 신청을 하면된다. 또한 중재판정부에 화해협의를 근거해서 화해판정을 내려달라고 할 수도 있고 만약 당사자가 서로 화해협의를 달성하고 신청을 철수한 다음에 후회가 발생된다면 다시 중재협의에 따라서 중재를 신청할 수도 있다.

(4) 중재판정의 철수, 승인 및 집행

중재판정을 내린 후 쌍방에 대해 똑같은 구속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당사자가 다시는 이 분쟁에 대해 중재를 제출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인민법원에도 기소할 수는 없다.

그러나 중국법의중재기구에서 내린 판정이라 할지라도 다음 네가지 상황중의 하나와 같을 경우가 발생하면 인민법원은 그 판정을 철수하거나 집행실시를 실행하지 않는 판정을 내린다.

첫째, 당사자가 계약중에서 중재조항을 세우지 않거나 사후에 서면적인 중재협

의를 달성하지 않을 경우

둘째, 피신청자가 지정된 중재인 혹은 중재절차를 진행한다는 통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나, 기타 피신청자가 책임져야 할 의무가 아닌 원인이 있는데 진술하지 못 했던 경우

셋째, 중재판정부의 조성 혹은 중재절차와 중재규칙이 합당하지 못한 경우

넷째, 판정한 사항은 중재협의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중재기구가 중재할 권력이 없는 경우 등이다.

이때 섭외중재재결을 철수하는 신청은 응당히 중재위원회가 있는 지방의 중급 인민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인민법원이 철수를 재정했거나 혹은 당사자를 기각하는 경우 당사자가 상소할 권력은 없다. 따라서 당사자는 쌍방이 새로이 체결한 중재협의를 근거해서 중재를 신청할 수 있고 또한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도 있다.

섭외중재판정의 집행신청을 할 때는 반드시 피집행자의 주소소재지 혹은 재산 소재지의 중급인민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이때 신청 실시기한은 쌍방 혹은 어느 한쪽의 당사자가 공민일 경우 일년이고 쌍방이 다 법인이나 혹은 기타단체일 경우 6개월이다.

3. 貨物賣買上의 문제

그동안 CIETAC이 접수했던 한중양국간의중재안건중 화물매매상의 중재가 77.7%를 차지하고 있는데 따라서 한·중양국간의 화물매매상 발생되는 이같은 분쟁 대한 주요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한·중무역의 발전에 대해 아주意義가 크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한 문제점들을 살펴보면 (1)계약의 성립, 변경 및 종료와 (2) 신용장으로 지급할 때에 매매쌍방의 권리과 의무 및 (3) 화물위험의 이전 등이다.

(1) 계약의 성립, 변경 및 종료

계약의 성립은 <중화인민공화국섭외경제합동법>의 제7조의 규정에 따르면 “당사자가 계약의 조항에 대해 서면적인 협의를 달성하고 체결하면 계약이 바로 성립한다. 서신, 전보, Telex등으로 협의를 달성하고 한쪽 당사자가 확인서를 체결하자고자 요구하면 확인서를 체결한 다음에야 계약이 성립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이나 행정법규가 규정된 국가의 허락을 필요로 하는 계약은 허락을 받은 다음에야 계약이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의 관련된 법률을 따라 국무원 혹은 대외경제무역부문의 허락을 받고 대외무역권을 취득한 기업만이 수출입무역을 할 수 있고 섭외 경제계약도 맺을 수 있다. 따라서 대외무역경영권을 취득하지 않는 기업이 달성한 섭외경제계약은 무효이다. 이런 기업과 회사들이 만약 화물을 수출 수입을 할 필요가 있다면 반드시 1991년 8월 29일에 중국대외경제무역부가 반포된 <당분간 대외무역대리제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같은 상품류의 대외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나 기업에 위탁해서 대외적으로 수출입계약을 맺어야 하고 그리고 계약은 위탁된 회사나 기업의 명의로 계약을 맺어야 한다. 만약 대외경제무역경영권이 없는 회사나 기업이 섭외경제계약을 맺을 경우 중재판정부는 이 계약의 무효성을 판정할 수 있으며 한편 계약중의 중재협의는 여전히 유효하다.

대외무역경영권이 있는 회사나 기업은 또한 반드시 그가 허락을 받았던 경영 범위와 상품범위내에서 계약을 맺어야 한다. 그러나 만약 이 경영권한이 있다면 계약을 맺을 때 한쪽의 당사자가 수입 또는 수출의 허락을 받았는지 여부가 계약의 효력에 대해 별 다른 영향이 없다. 예를 들면 한·중간의 안전증에는 당사자는 상대방이 수입허락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것이 중국대외무역제도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계약이 무효하다고 주장을 한 적이 있다. 이에 대해 중재판정부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내세웠다. 최고인민법원의 <<섭외경제합동법>>을 적용할 때 여러문제의 답변>에서 계약의 무효를 확인하는 문제에 관한 규정에 나열된 9종류의 계약을 무효로 판정해야 할 상황중 수입 허락신청과 상관된 것은 하나도 없었다.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세청, 대외경제무역부가 수출입허가증의 관리제도를 위반할 경우에 해당한 처벌규정> 제5조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다. 즉 “허가증이 있어야 할 상품을 수입하려고 신청할 경우 유관 허가증을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면 화물을 몰수되거나 운반해야 하는 처리를 받게 돼 있고 그러나 만약 세관이 규정된 기한내에서 수입허가증을 제출하면 화물가치의 30%이하 5%이상의 벌금을 내야 한다”, 따라서 어느 한쪽이 수입허가증을 신청해야 하지만 신청을 안 했을 경우에도 체결된 계약은 무효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법인이 계약을 맺을 때 자연인을 통해서 해야 하며 만약이 자연인이 바로 회사의 법정대표자일 경우 회사를 대표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반드시 법정대표인의 특별 권한수여과 추가인정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합당한 권력수여가 역시 한·중간에 발생한 안건들에 항상 분쟁이 일어난 문제이다.

그 밖에도 당사자가 계약을 맺을 때 상대방의 명칭이 계약하는 실제명칭과 일치하는지를 주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주체가 부합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만약 부주의로 주체가 부합하지 않은 문제를 발생하면 응당히 증거를 제출해서 “양자의 명칭이 문자상에 일치하지 않는데 실제에는 같은 회사”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2) 신용장으로 지급할 때의 매매쌍방의 권리과 의무

한·중간의 화물매매는 대부분 신용장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중국<섭외경제합동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르면 중화인민법률에 규정이 안 돼 있는 부분은 국제 관례를 적용한다로 되어 있다. 따라서 신용장영역에서 국제상회의 신용장통일규칙(UCP)는 바로 중국의 중재인들이 신용장안건을 판정할 때에 쓰는 가장 주요한 관례이다.

특히 CIETAC의 안건을 따르면 신용장중에 매매 쌍방의 권리과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買方이 신용장을 작성할 의무

買方은 계약에 규정된 시간, 종류, 방식을 따라 賣方이 受益者로된 이 신용장을 작성할 의무가 있다. 통상적으로 買方이 신용장을 작성하는 것이 賣方이 화물교부의무를 수행하는 전제조건이다.

만약 매매계약에서 買方이 신용장을 작성하는 시간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화물의 운송시간에 대해 규정을 한다면 買方은 응당히 화물운송하는 첫날전의 시간내에 반드시 신용장을 작성해야 하고 늦어도 운송하기 시작한 첫날에 제출해야 한다. 만약 매매계약에 구체적인 운송한 날짜(어느 기간동안이 아닌)를 규정했다면 買方은 응당히 이 날짜이전의 적당한 시간내에 신용장을 작성해야 한다. 賣方에 대해 買方이 신용장을 작성하는 날이 바로 賣方이 신용장을 받는 날 혹은 신용장을 작성한 서면 통지서를 받는 날이고 신용장을 작성한 날은 아니다.

만약 매매조약에서 신용장의 내용이나 조항에 대해 약속이 없으면 買方은 신용장 작성신청하기 전에 작성양식을 FAX로 상대방에게 보내고 賣方의 의견을

문의하는 것이 좋다.

만약 買方이 신용장을 작성하기 전에 賣方의 의견을 문의를 안 하고 직접 신용장을 작성하는 은행에다 신용장을 작성해달라고 하고 그리고 신용장이 매매계약의 규정과 다르다면 賣方が 이에 대해 이의를 제출할 수 있다. 따라서 매매쌍방이 신용장에 포함돼어야 할 조항에 대해 일치를 달성하고 나서 買方이 다시 이것으로 근거해서 신용장을 수정해야 한다. 만약 買方이 신용장을 수정하지 않거나 쌍방이 일치를 달성하지 못하고 그리고 신용장이 매매계약의 조항과 모순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이것들은 다 買方이 조약을 지키지 않아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그 행위가 계약을 위반하는 행위다. 賣方が 상대방이 위반하는 정도를 봐서 계약을 해체하거나 배상을 요구하거나 혹은 신용장을 받아들이고 그중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배상을 보류할 수는 것이다.

만약 賣方が 계약과 일치지 않은 신용장을 받아서 이의를 제출하지 않고 오히려 화물을 운송하는 동시에 은행에 증거를 제출하고 지금해달라고 할 경우에는 賣方が 이미 買方이 작성한 신용장 그 자체는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2) 합당하지 않는 증거에 대한 권리과 의무

신용장의 규정에 따라 賣方은 반드시 신용장과 일치한 증서를 작성해야 한다. 만약 賣方が 제출한 증서와 신용장의 내용이 일치한다면 은행은 반드시 돈을 지급해야 한다. 은행은 증서를 접수한 후에 買方은 반드시 신용장과 일치한 증서에 대해 은행에다 돈을 납부해야 한다. 만약 買方이 화물을 받지 못하거나 화물의 품질이 안 좋을 때의 경우 賣方が 계약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소송을 할 수 있다. 즉 買方이 화물인수를 거절하거나 또는 이에 상응한 배상을 요구하는 정당한 요구를 정당하게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화물이 목적항에 도착했을 때 검사를 통해 계약에 규정한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역시 인수거절 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3) 위험의 이전

위험의 이전에 관한 규칙은 중국의 법률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그러나 CIETAC가 한·중간의 거래에 있어서 이같은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주로 이에 관련된 국제관례를 참조하는데. 예를 들면 1990년의 INCOTERMS, 그리고 <유엔국제화물매매조약공약> 등이다.

4. 合資合作上의 문제

중국의 법률에 따라 한국은 중국에서 직접적인 투자형태로써는 중외합자경영기업과 중외합작경영기업 및 독자기업등 3가지의 방식을 취할 수 있다. 이에 따라서 CIETAC가 접수했던 한·중간의 合資合作上의 분쟁은 주로 出資上의 문제, 청부경영상의 문제, 理事會 및 代表理事의 권한상문제 등이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1) 出資上의 문제

중외합자경영기업의 出資방식과 出資시간에 대해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기업법>과 그실시조항 그리고 <중외합자경영기업의 합영측의 出資문제에 대한 여러규정>에는 이 문제에 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여 작성돼 있으며 특히 한·중 당사자들은 아래와 같은 문제들을 특히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첫째, 공동경영기업의 등록자본중에 한국측 공동경영자의 투자비례은 보통 25%이상이다. 따라서 공동경영한 각측들은 응당히 등록자본의 비률에 따라 이윤, 위험성, 손실을 나누어가져야 한다.

둘째, 공동경영자가 화폐로 출자해도 좋고 또한 건축물, 공장건물, 기계설비, 혹은 기타 자재, 공업소유권, 특허기술, 토지사용권등으로 출자해도 좋다. 그러나 건축물, 공장건물, 기계설비 혹은 기타 자재, 공업소유권, 특허기술로 출자하는 것은 그에 해당하는 가치가 공평합리의 원칙으로 공동경영자의 각측이 협상을 통해 판정한다거나 아니면 제3자를 초청해서 판정해야한다. 외자측이 출자로 해당한 수입기계설비의 가치평가는 중국수출입상품검사국을 통해 가치판정을 받아야 하며. 토지사용권은 토지관리기관이 作成發行하는 가치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셋째, 공동경영자의 각측은 공동경영계약의 규정에 따라 공동경영기업에다 투자한 출자가 반드시 공동경영자가 소지한 자금, 또는 자기 소유이지만 아직은 아무런 담보를 설정해 놓지 않은 실물, 공업소유권, 특허기술 등이어야 한다. 그리고 실물, 공업소유권, 특허技術 등으로 자금을 출자하는 자는 반드시 해당기관에서 발행하는 소유권과 처지권을 가지고 있다는 유효한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외자측이 출자하는 자금은 반드시 외화여야 하고 혹은 중국국경내에서 설립한 기타 외자투자기업에서 얻은 인민폐이윤이어야 한다.(이때 또한 역시 외화관리기

관의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건축물로 출자한 자는 소유권증명을 제출해야 하고 동시에 반드시 부동산 관리기관에다 소유자 변경수속을 해서 건축물의 소유권을 공동경영기업의 명의下에 두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출자로 볼 수 없는 것이다.

토지사용권으로 출자한 중국측은 반드시 토지의 사용권증명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동시에 토지관리기관에 가서 사용권 변경 수속을 해야 하고 공동경영기업의 名議下 두어야 한다.

넷째, 공동경영기업의 어느 한측도 공동경영기업의 명의로 얻은 차관, 임대한 서비스, 기타 재산 혹은 공동경영자외의 타인의 재산을 자기의 출자로 만들 수는 없고 동시에 또한 공동경영기업의 재산과 권익 혹은 공동경영한 다른 측의 재산과 권익으로 자기의 출자의 담보로 삼을 수는 절대로 없다.

그러나 중외합작기업은 중외합자기업보다 더 융통성이 있는 투자방식으로 그 조직형태는 법인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출자방식, 경영방식 또한 비교적 신축성이 있다.

(2) 정부경영상의 문제

공동기업의 경영에 관하여 중국의 대외경제무역부, 국가공상업행정관리국은 1990년 9월 13일에 <공동기업경영에 관한 중외합자경영기업에 대한 규정>을 이미 발표하였다. 따라서 한,중 합자에 있어서 각측은 공동기업경영방식을 선택할 때 아래 문제에 특별한 주의를 해야 할것이다.

첫째, 공동기업경영합영기업은 반드시 합영기업과 공동기업경영자간에 공동기업경영계약을 맺어야 한다. 합영기업의 각투자측간에 공동기업이윤의 계약을 맺으면 안 된다. 실질상 당사자가 항상 경영쌍방간에 공동기업경영계약을 맺고 공동기업의 한 쪽이 합영한 다른 측에다 이윤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데 이것들은 원칙적으로 上述한 규정에는 적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합영기업의 각측이 투자비율에 따라 위험과 손실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다..

둘째, 공동기업경영계약은 합영기업의 계약중에 공동기업경영과 관련이 없는 조항을 수정하면 안 되고 원합영계약의 목적, 원칙과 일치해야 한다.

셋째, 공동기업경영계약 그의 변경, 지연, 중지, 종지등은 모두다 합영기업을 심사비준한 기관에서 허락을 받아야 한다.

(3) 이사회 대표이사의 권한상 문제

중국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외 합자경영기업에 이사회를 설치하고 이사회는 합영기업의 최고 권력기구이고 합영기업의 모든 중대한 문제를 토론결정한다. 그의 인원조성은 합영각측의 협상을 통해 계약이나 章程에서 확정하고 동시에 합영각측에서 위임해서 파견하기도 하고 바꾸기도 한다. 이사장은 합영기업의 법정대표인이다. 중외 합자경영기업은 또한 경영관리기구를 설립해서 일상경영관리를 맡는다. 경영관리기구에는 대표이사 한명이 설치돼 있어서 이사회 회의의 각종결의를 실시하고 합영기업의 일상관리 일을 맡는다.

실제로 한,중 합영기업이 합영 각측이 그들이 위임한 이사의 권한, 이사회와 대표이사의 권한을 잘 가리지 못 해서 항상 합영의 한측이 타측에 위임한 理事의 개인행위를 합영타측의 행위로 본다거나 대표이사의 職權을 대표이사를 위임한 측의 행위로 보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래서 불필요한 분쟁이 일어나고 최종적으로 합영기업의 경영에 영향을 미치고 기업으로 유지해 나가기가 어려울 정도로까지 이르게 되는데 이것은 한·중양국의 합영기업이 다 같이 지혜롭게 해결해야 나가야할 것이다.

V. 結論

韓中兩國은 1992년 國交修交이후 지난 6년동안 무역과 經濟協力이 비약적으로 확대·증가하였다. 1992년 수교당시 64억 US\$ 수준이었던 韓中貿易은 1997년에는 약 230억 US\$ (수출과 수입은 각각 평균 61.7%, 20.1%)에 도달하여 매년 평균 35.8%의 빠른 증가세를 이루고 있으며 현재 중국은 미국, 일본에 이어 한국은 3대 무역대상국이 되었고 한국은 중국의 4대 무역대상국이 되었다. 韓中投資協力分野에 있어서도 현재 중국은 한국의 제1위 투자대상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비약적인 韓中交易關係의 발전에 따라 양국간에 무역분쟁도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고 있다. 중국측 자료(中國國際經濟貿易委員會: IETAC)에 의하면 한중수교이후부터 1997년 10월말 현재까지 한중간에 발생한 무역분쟁 건수는 총 166건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한국측이 제기한 무역 클레임 건수는 40건으로 전

체의 24%이고 반면에 중국측이 제기한 무역클레임 건수는 126건으로 76%에 이르러 양국간 통상마찰을 야기시킬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어 앞으로 한중간의 중재제도에 대한 긴밀한 협조체제가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먼저 중국의 國際仲裁(섭외중재)기구인 중국국제경제 무역위원회(IETAC)의 국제중재제도에 대하여 그 개념과 특징 및 기본원칙과 함께 핵심사항인 仲裁契約, 仲裁人, 仲裁節次, 仲裁判定, 強制執行 등에 관하여 살펴보고 이어서 수교이후 한중양국간의 최근까지 발생한 무역분쟁에 대한 중국측 및 한국측 자료를 年度別, 原因別, 品目別 등으로 분석한 다음 한중양국간에 있어서 주요중재해결과제인 중재협의와 중재절차 및 화물매매 그리고 합자합작상의 제 문제점들을 구체적이며 실무적으로 살펴 보았다.

오늘날 한중양국간의 무역은 수교와 함께 현저하게 확대·발전되었고, 이와같이 한중무역이 융성함에 따라 필연적으로 무역분쟁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제 한중양국간에는 무역 및 경제활동을 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고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양국간의 상사분쟁을 중재제도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보다도 양국이 각각 자국의 국제상사 중재제도를 정비하고 고도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양국은 각각 仲裁法 및 仲裁規則의 정비와 함께 상설 중재기관의 조직강화와 운영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중재법 및 중재규칙의 정비에 있어서는 세계적인 개정의 흐름과 함께 조화와 균형에 초점을 맞추면서 한중양국간의 유구한 역사·문화적 배경과 풍토에도 적합한 중재법이나 중재규칙을 충분히 고려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그밖에도 더욱 중요한 것은 한중양국의 상설중재기관인 大韓商社仲裁院과 中國國際經濟貿易委員會가 공동으로 하여 어떠한 무역분쟁이라도 일국의 중재사건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시각을 버리고 상호 동반자적인 연대교류를 긴밀하게 하여 양국거래 당사자가 서로 만족할만한 중재판정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수교와 함께 한중양국간에 체결된 한중무역협정, 한중중재협정 및 韓中輸出入 標準契約書등 구체적인 분쟁해결을 위한 제 과정들은 아직도 운영상의 문제점 뿐만 아니라 법제도상의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향후에는 한중양국간에 있어서의 중재제도에 대한 법제도적인 측면에서의 비교·분석은 물론 판례중심의 실증분석 연구가 기대된다.

ABSTRACT

This study reports on the Arbitration system in the China International Economic and Trade Arbitration commission (CIETAC) and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problems of Korea and China.

The Chines laws including Arbitration laws are influenced by the civil Code system Particulary the German system. China is contracting state of the U N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1958 New York Convention),which became effective in the China April 22, 1987.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is popular in China.

CIETAC is the sole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body in China. CIETAC has two sub-commissions, one is shen zhen S · E · Z and the other in shanghai.

The CIETAC rules, are similar to the rules in effect in Countries using a civil Code system.

Both an agreement to submit an existing dispute to Arbitration and an Arbitration clause in a contract relating to future disputes are recognizeal as valiad Arbitration agreements.

CIETAC has the power to make a decision on disputes concering the validity of the Arbitration agreements. or jurisdiction over a specificic case.

參 考 文 獻

1. 한국문현

姜二秀, 貿易클레임, 三英社, 1981.

金德洙, 韓中兩國貿易間韓國設置自由港的可能性, 韓國貿易學會誌, 第 17 券, 1992, 5 漢城

_____, 韓國與其他外國直接投資在中國的比較分析和 綜合評價, 「中國管理科學」誌, 第 5 券, 第3期, 中國科學院, 北京 1997.8

金秉俊, 尹晋基, 中國의 新仲裁規則과 韓國企業의 對應, 人權과 正義, 통권163호, 1990.3.

金相浩, “韓·中貿易 및 投資紛爭 解決에 관한 小考” 仲裁, 제259호, 1993. 9

對外經濟政策研究院, 부설 北方地域센터 中國便覽, 서울, 對外經濟政策研究院, 1992.

大韓商事仲裁院, 韓·中·日 國際仲裁심포지움 자료(I), (II), 1993. 11. 24.

李萬熙, 中國의 仲裁制度, 저스티스, 제25권 제2호, 서울, 1992

李淳雨, “韓·中仲裁協定締結의 意義”, 仲裁, 제251호, 1993. 1.

文俊朝, 中國投資의 法的諸問題, 서울, 行法社, 1991.

法務部, 中國法研究院(I)(II)(III), 서울, 1992.

鄭冀人, 商事仲裁論, 서울, 貿易經營社, 1990.

_____, “韓國商事仲裁制度의 效率的 運營을 위한 研究”, 成均管大學 대학원 박사논문, 1982.

한국무역협회, 對中國交易 및 投資案內, 1995.

한국법제연구원, 中國의 涉外經濟紛爭解決制度와 事例, 1995.

2. 중국 문현

法學教材編輯部(國際貿易法)編寫組, 國際貿易法,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92.

徐茂義 主編, 新編經濟合同法概論, 山西經濟出版社

姚梅鎮, 國際投資法, 무한대학출판사

袁光輝 主編, 仲裁理論與實務, 山東人民出版社, 1997.

張曉衿，中國涉外經濟法律實務，北京，法律出版社，1993。

章尚錦 主編，涉外經濟法通論，北京，中國人民大學出版社，1993。

程德鈞，涉外仲裁與法律，中國人民大學出版社，1992。

中國國際經濟貿易仲裁委員會，中國國際經濟貿易仲裁裁決書選編，中國人民大學出版社，1993。

王存學 主編，中國經濟仲裁和訴訟實用手冊，中國發展出版社，1993。